

서울서부지방법원 2014. 10. 10 선고 2014가단492 판결 [이득상환금]

---

### 재판경과

서울서부지방법원 2015. 8. 20 선고 2014나33073 판결

서울서부지방법원 2014. 10. 10 선고 2014가단492 판결

### 전문

원고주식회사 크라운제과

피고A

변론종결 2014. 9. 19.

판결 선고 2014. 10. 10.

### 주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9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. 1. 14.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# 청구 취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인정 사실

가.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가계수표(13매, 액면금 합계 39,000,000원, 이하 '이 사건 수표'라고 한다)를 발행·교부하였다.

나. 그 후 원고는 그 영업사원인 B 등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아 가지고 있다가 각 지급제시기간에 지급장소에 적법하게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거절 되었다.

【인정 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의 1~13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### 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인인 피고는 그 소지인인 원고에게 그 액면금인 39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. 1. 14.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### 3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이 사건 수표 중 별지 목록 순번 1~3, 7~13의 경우 B에게 물품대금의 선수금 명목으로 발행한 것이나 그 후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원인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.

판단컨대 을 제3, 4, 7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수표를 물품대금의 선수금 명목으로 발행하여 그 원인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.

### 4. 결론

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받아들인다.

판사정인재

별지